

정관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상호)

본 회사는 주식회사 (이하 "회사")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
-
-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

제 3 조 (본점의 소재지)

회사의 본점은 에 둔다.

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점·출장소·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 4 조 (광고방법)

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에 게재한다.

제 2 장 주식

제 5 조 (발행예정 주식의 총수)

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.

제 6 조 (1 주의 금액)

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 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.

제 7 조 (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

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.

제 8 조 (주식의 종류)

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.

제 9 조 (주식의 양도)

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양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본 조를 삭제한다)

제 10 조 (명의개서 및 주주명부)

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고, 주식 취득자의 청구에 따라 명의개서를 한다.

제 3 장 주주총회

제 11 조 (소집)

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주주총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집한다.

제 12 조 (결의방법)

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.

제 4 장 이사·감사

제 13 조 (이사과 감사의 수)

회사의 이사는 명 이상, 감사는 명 이상으로 한다. (자본금 10 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1 명 또는 2 명,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)

제 14 조 (임기)

이사의 임기는 3 년,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.

제 15 조 (대표이사)

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1 명을 선임하며,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.

제 16 조 (보수와 퇴직금)

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,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른다.

제 5 장 계산

제 17 조 (사업연도)

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.

제 18 조 (이익배당)

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,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지급한다.

부칙

제 19 조 (시행일)

본 정관은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0 조 (발기인의 성명과 주소)

회사 설립 시의 발기인의 성명·주소는 아래와 같다.

성명	주소	인수 주식수

위와 같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한다.

20 년 월 일

구분	성명	서명 또는 인
발기인		

※ 상법상 절대적 기재사항(상호·목적·발행할 주식 총수·1주 금액·설립 시 발행 주식수·본점 소재지·공고방법·발기인의 성명과 주소)이 빠지면 정관이 무효입니다. 설립등기 전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.